

##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8. 12. 14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8. 12. 14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67회 부천시의회(정기회) 제15차 위원회(1998. 12. 23) 상정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원태희)

가. 제안이유

- 실직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
- 도정12200 - 446(98. 11. 20)호로 공공근로사업 전담조직을 보강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조례 개정

나. 주요골자

- 공공근로사업 전담부서 설치
  - 기구 : 부시장 직속기구 실업대책총괄실
  - 정원 : 9명(5급 1, 6급 2, 7급 3, 8급 3)
    - ※ 정원은 순증없이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상계조정
  - 주요업무 : 실업대책업무에 관한 사항
  - 설치기간 :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의 내용   | 답변 내용  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다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?</li> <li>○ 공공근로사업 전담부서가 설치되어도 정원에 변동사항은 없습니까?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정원범 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</li> <li>○ 네, 없습니다.</li> </ul> |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###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출년월일 : 1998. 12. 23

제 출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수정이유

- 공공근로사업 전담부서를 부시장 직속기구에서 원래의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국 소관부서로 하고자 수정함.

주요골자

- 공공근로사업 전담부서를 부시장 직속기구로 두지 않고 지역경제국에 실업대책총괄과를 신설함. (안 제9조제1항)
- 지역경제국의 분장사무에 실업대책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(안 제9조제2항제4호)

###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중 “실업대책총괄실”을 삭제한다.

안 제6조의2를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기업지원과” 다음에 “실업대책총괄과”를 삽입하고 동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실업대책업무에 관한 사항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| 개정안  | 수정안  |
|---|--|--|
| <p>제3조(기구의 설치) 시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실, 정책기획실, 공보실, 읍부즈만, 행정지원국, 지역경제국, 세무국, 복지환경국, 건설교통국을 두며 감사실, 정책기획실, 공보실, 읍부즈만은 부서장 직속기구로 한다.</p> <p>(신설)</p> <p>제9조(지역경제국) ①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, 국제통상과, 기업지원과를 둔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| <p>제3조(기구의 설치) 시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실, 정책기획실, 공보실, <u>실업대책총괄실</u>, 읍부즈만, 행정지원국, 지역경제국, 세무국, 복지환경국, 건설교통국을 두며 감사실, 정책기획실, 공보실, 읍부즈만은 부서장 직속기구로 한다.</p> <p><u>제6조의2(실업대책총괄실) 실업대책총괄실은 실업대책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| <p>제3조(기구의 설치) 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 <p>제9조(지역경제국) ①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, 국제통상과, 기업지원과, <u>실업대책총괄과</u>를 둔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실업대책업무에 관한 사항</u></p> |

[수정안포함]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기업지원과” 다음에 “실업대책총괄과”를 삽입하고 동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실업대책업무에 관한 사항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존치시한) 실업대책총괄실은 한시기구로써 2000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한다.